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3852

발의연월일 : 2025. 10. 31.

발 의 자 : 안호영 · 염태영 · 윤준병 박홍배 · 이용우 · 전현희 강득구 · 박 정 · 허성무 김영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과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등을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하여 수변생태벨트, 임야, 녹지 등 수변녹지를 조성하여 낙동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토지등을 매수하여 수변녹지조성사업을 이행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부담금에 대한 면제조항이 없어,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토지등 매수 및 수변녹지조성 사업은 상수원 상류 지역 오염원을 제거하고 신규 오염원 입지를 사전에 차단하여 상수원 수질을 보호하

고 국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공익사업이고,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은 상수원 수질개선 및 규제지역 주민지원이라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다른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조성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한 토지등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부담금을 면제하여, 국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사용목적에 맞게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9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부담금 등의 면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을 활용한 수변생태벨트 조성 등 수질 개선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농지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매수한 토지등을 활용한 수변생태벨트 조성 등 수질 개선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9조의2(부담금 등의 면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을 활용한 수변생태벨트 조성 등 수질 개선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농지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한다.